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04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이상희 · 조정훈 · 김재섭
정동만 · 이달희 · 박상웅
박성훈 · 박충권 · 최수진
김장겸 · 윤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창작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함.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의2 신

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3. (생 략) 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자</u>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